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498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2. 선고 2015구합135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9.
판 결 선 고	2016. 3.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4,212,520원 및 지방교육세 89,998,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전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각 규정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서 그 입법 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참조).

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F 주식회사의 G이 원고로부터 임차인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1994. 11. 3. 설립 당시 석유류 제품 판매알선업(도, 소매), 부동산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회사였으나 2008. 7. 9. 사우나, 찜질방 운영업 및 목욕탕, 불가마 관리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11. 12. 16. 한식, 분식, 음료 매점운영업, 스포츠마사지, 경락, 이발, 구두, 지압업, 스포츠센터 운영업, 이·미용 서비스업 등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등기를 마친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교환한 [redacted]구 B 소재지를 2010. 1. 5. 원고 법인의 H지점으로 등기하였던 사실, ㉣ 원고가 2011. 1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목욕장업 설치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재지를 원고 법인의 C지점으로 등기하였으며, 같은 달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업장 상호를 ㈜D, 종목을 찜질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2. 3. 29.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사실, ㉤ 그 후 원고가 2013. 8. 6. 위 목욕장업의 폐업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점 등기를 한 것 외에도 목욕장업 설치 신고, 찜질방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찜질방에 필요한 사업의 종류를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기까지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도 H지점을 설치하여 상당기간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갑 제3, 5호증의 각 확인서 외에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데다가 위 각 확인서는 원고의 당초 사업목적 및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노후화된 수도배관, 전기 및 소방 설비 등을 철거하고 기본설비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원고의 직원 또는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인원이 상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I가 위 각 부동산에서 'J'라는 상호로 찜질방 영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이미 원고의 영업을 위한 물적 설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업을 위한 기본설비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고 원고가 2011. 12.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목욕장업 설치 신고를 한 후 2013. 8. 6.경에서야 폐업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실제로 찜질방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나, 그러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준비행위를 통해 계속적인 사무 또는 사업을 시작하여 중과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백현

판사 왕정옥

판사 채동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6-24

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3.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끝.